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.

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 및 발의자 : 2019. 2. 8.(금), 강동구청장(문화예술과)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2.(화) (의안번호 제83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강문수

나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」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, 면제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 형식으로 정비하여 관련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1) 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 및 제3조)

2)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
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) 기 타

- 입법예고(2018. 11. 21. ~ 2018. 12. 11.) 결과: 의견없음

- 규제심사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- 아동영양평가 결과: 원안동의

3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

- 현행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1999년 5월 11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. 즉,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주차장 사용료는 기존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」 제20조 및 제21조의 근거로 징수하였음. 안 제4조 및 제5조는 규정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임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은 개정 내용상으로 보면 타당함

다만, 관람료와 주차장 사용료 외의 사항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경우 본 조례안의 제명은 한계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현 행	개 정 안	검 토 안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	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	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·관리 조례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 다만, 제명에 대하여는 암사동유적의 운영 상 사용료 외 다른 사항의 근거를 마련 할 경우 다시 제명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)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서울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?
답변) 서울 암사동 유적이라는 명칭이 고유명칭임
- 질의) 제명이 길어지기 보다는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?
답변) 현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음. 추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음. 그렇지만 지금 개정해도 문제는 없음.
- 질의)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로는 안되는지?
답변) 담당부서에서도 선사라는 말을 넣고 싶으나 어려운 상황임

5. 수정안 요지

○ 수정이유

- 제명을 단순화 하고자 함

○ 주요 수정내용

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운영·관리 조례”로 수정함

※ 붙임 : 수정문, 수정안대비표

6. 심사결과

-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붙임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중 “관람료 징수” 를 “운영·관리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(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<u>관람료 징수 조례</u>	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<u>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</u>	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<u>운영·관리 조례</u>